



미국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러더스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미국 뉴욕 주 검찰이 리먼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미국 2위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을 기소하였다.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체로 신용평가사, 헤지 펀드 등은 빈번하게 거론됐으나 회계법인이 도마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 관련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주 검찰은 12월 21일 E&Y를 리먼브러더스의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는 지난 10년간 회계법인을 상대로 취해진 가장 전면적인 기소”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NYT)는 “리먼이 무너진 지 2년만에 시행된 첫 법률적 조치”라고 전했다.

E&Y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9월 리먼 파산 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리먼의 외부 회계 감사를 맡아왔다. 검찰은 E&Y가 리먼이 회계 분기를 마치기 전에 장부에서 부채를 떨궈내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한 것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32쪽의 기소장은 “이같은 거래로 리먼의 재무상태표에서 수백억 달러의 증권이 은근슬쩍 제거됐고, 이는 재무 상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E&Y는 지난 2001~2008년까지 리먼의 회계 감사를 맡은 이후 약 1억5000만달러를 수수료로 받았다.

검찰은 E&Y가 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E&Y는 협의를 부정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회계법인 기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리먼의 재무제표는 리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의 중심에는 월가 은행들의 회계 기법 중 하나인 ‘리포 105(Repo 105)’가 자리잡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리먼이 ‘리포 105’라는 수법으로 재무제표에서 부채를 줄였고, 회계법인인 E&Y가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채권인 리포 매매를 통해 100달러를 빌릴 경우 105달러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리포 105’는 월가 은행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변형된 기업 재무관리 수단 중 하나다. 향후 되사겠다는 조건으로 자산을 팔아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채운 뒤 수일 내에 다시 자산을 되사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옮기기는 ‘자금 조달’이 아닌 ‘매각’으로 취급됐다.

리먼은 이 거래를 재무제표에서 ‘매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견해가 필요했는데, 미국에서 의견을 구하지 못하자 영국으로 향했다. 결국 영국 법률회사인 링클레이터스로부터 법적 견해를 구했다. 이 법률회사는 “리포 105거래를 매각으로 규정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법률 회사의 견해가 영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래 역시 영국에서 행해져야 했고, 리먼은 해당 증권을 들고 영국 은행으로 향했다.

이같은 수법을 통해 리먼의 재무상태표에서 최대 500억달러의 자산이 사라지고 회사의 부채가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리먼은 망하기 직전까지 이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봉괴 직전 해에 ‘리포 105’를 대거 활용했다. 팔기 어려운 수십억달러의 악성 모기지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소장은 이 거래가 별도의 사업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고, 오로지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리먼의 역대 최고재무책임자(CFO) 2명은 E&Y 출신이었다. 지난 2004년~2007년에 리먼의 CFO를 지낸 크리스토퍼 오미라는 리먼이 E&Y 고객이었던 1994년에 리먼에 합류했다. 그의 전임자인 데이비드 골드파브 CFO 역시 E&Y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회계법인과 고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돼있는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리먼은 E&Y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다. 오딧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리먼 브로 직전 해인 2007년에 리먼은 E&Y의 미국 8대 고객이었다. 리먼은 지난 7년간 E&Y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동안 매년 15대 고객에 포함됐다.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유착 관계는 지난 2002년의 엔론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미국 에너지업체인 엔론이 회계부정으로 과산하면서 이를 묵인했던 회계법인 아서앤더슨도 결국 몰락했다. 당시 엔론의 최고 회계 책임자를 포함한 임원진들은 아서앤더슨 출신이었다.

엔론 사태 이후 기업의 회계기준을 강화한 사베인옥슬리법이 제정됐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널리스트 어카운팅 옵저버의 창간자인 잭 시에지엘스키는 “사베인옥슬리법 도입 이후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계법인과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취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리먼이 망했기 때문에 E&Y의 부정 회계감사 혐의가 부각되는 것일 뿐, 다른 ‘대마불사’ 금융회사들의 회계법인 역시 유사한 회계 기법을 용인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KPMG에서 회계감사를 받는 씨티그룹과 도이치뱅크, PwC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모두 리포 105 스타일의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규모가 리먼보다 작았고, 리먼처럼 망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칼럼에서 밝혔다.

Repo 105 거래란 실질적으로는 담보 제공의 단기차입거래임에도 매각거래로 회계조작하는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이다. 이 거래를 통해 유입된 현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일시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에서 부채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재무제표가 발행된 이후에 회사는 현금을 차입하여 매각으로 회계처리했던 원래의 자산을 환매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제거시점 및 제거조건의 결정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 금융자산의 제거

문단 17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2) 문단 18과 19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20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단 1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이다.

-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 (2)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문단 19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문단 19 금융자산(‘최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거래상대방(‘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거래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거래로 본다.

- (1) 최초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도자가 그 상당액을 단기간 선급하면서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충족된다.
- (2)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 (3) 양도자는 최종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자체 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양도자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현금 회수일부터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단기결제유예기간 동안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를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단 20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문단 18 참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2)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 (3)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나)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문단 21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문단 20 참조)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 · 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양도의 결과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예 : 양도자가 확정 가격이나 매도가격에 대여자의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하고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다면 [예 : 재매입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면서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또는 계약상 더 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양도(예 : 대출채권의 공동인수 후 분할)하되 그 거래가 문단 19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이다.

문단 22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지가 명백하여 별도의 계산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편,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 전 · 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적절한 현행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고 비교하며,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순현금흐름 변동을 고려하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문단 23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문단 20(3) 참조)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

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이 경우 이외에는 양도자가 양도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채권 등의 양도 · 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 따라 매출채권 등(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1-1) 이 해석은 기업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거나 다른 금융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포괄한다.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2-1)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것이고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담보책임은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2-2)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보유하는지 여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자산 이전거래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은 더 이상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2-3)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 후 양도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 2) 유동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 3)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액이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4) 만약 양도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자산유동화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유동화되는 자산이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이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

3. 회계처리

가. 매각거래 : 금융자산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한다.

나. 차입거래 :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4. 주석공시

금융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법인 임직원이었던 자가 감사의뢰인과 고용관계를 맺었을 경우의 독립성훼손위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하면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는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는 감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독립성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세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290.143 과거에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또는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었던 자가 현재에는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개인과 이전에 이 개인이 소속되어 있던 회계법인간에 여전히 중요한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이기적 위협, 유착위협 및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인증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되거나 고용될 것을 알고 있고, 또는 이를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독립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290.144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이전에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재직했던 자가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된 경우 발생하는 이기적 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 (1) 해당 개인의 인증의뢰인에서의 직위
- (2)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에 관여하게 될 정도
- (3)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 또는 회계법인을 퇴직한 이후 경과한 기간
- (4)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의 직위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해당 인증업무 계획 수정의 적절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함.
- 경험이 충분히 있는 인증업무팀을 배정함.
-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함.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 (1) 해당 개인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퇴직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해당 개인에게 회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해당 개인은 실제적으로나 외관상으로, 회계법인의 사업이나 전문가적 활동에 계속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90.145 인증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될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기적 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1) 인증의뢰인과 진지하게 고용협상을 시작하는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회계법인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
- (2) 해당 개인을 해당 인증업무에서 제외시킴.

또한 해당 개인이 업무수행기간동안 행한 중요한 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외부회계감사의 독립성훼손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령과 윤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사의뢰인 간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자본주의 감시장치로서의 외부회계 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관철시키려면 폐해가 많은 미국식 시장주의에 입각한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자유계약 감사수임제도를 폐기하고 공적 기준과 기구를 통한 감사인 지정 배분제도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

